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.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 19970107 / 2025-01-17 13:21:37

사업운영계획서

사 업 명	의성 점곡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(7년차)
주관기관	경상북도 의성군
실행주체	의성군산림조합

2024. 12. .

의성군산림조합

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.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의성 점곡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
사업운영계획서 (2025년도 - 7년차)

1. 사업 개요

1) 사 업 명 : 의성 점곡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(7년차)

2) 목 적

- ❍ 조림사업 실행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목재생산림 조성
- ❍ 임도신설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
- ❍ 한국형산림인증을 통한 인증받은 목재의 유통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,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산림경영자체가 산주에게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 소득 창출
- ❍ 산림 규모의 영세성과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·집단화하고 투자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·확산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

3) 사업범위 : 의성 점곡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사업의 실행【사업 실행에 따른 실시설계 및 사업비정산용역의 대행(외주사업으로 실행), 직접사업의 실행】

4)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신청액

- ❍ 사업기간 : 2025. 01. ~ 2025. 12.
- ❍ **소요예산 : 758,282천원**

※ 예산과목 : 민간대행사업비(402-03)

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.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5) 기대효과

- ❍ 조림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는 경제림 육성
- ❍ 임도시설을 통한 사유림 경영기반 확충 및 단기소득임산물 수확을 위한 접근성을 높여 소득창출 기대
- ❍ 한국형산림인증 및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으로 선도단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및 신규 소득 창출 도모
- ❍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2. 사업추진계획

1) 추진목표 :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선도산림경영단지를, 2025년(7년차) 사업으로 경제수 조림, 기반시설 조성(임도), 조림지 풀베기 등을 실행하여 10년 내 자립경영이 가능한 사유림경영단지 조성

2) 추진체계 및 역할 : 산림청(총괄기관), 의성군청(주관기관), 의성군산림조합(전문경영주체)

3. 사업내용

1) 기본계획에 반영된 직접사업 실행【임도, 조림사업, 숲가꾸기사업 등】, 사업비정산용역의 대행, 사업관리경비의 집행

- ❍ 사업대상지 :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선도산림경영단지 일원

2) 2025년도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세부추진 일정

구 분	사업별	사업량 (ha, km)	세부추진일정				비 고
			대상지 확 정	설 계	실 행	정 산	
조 림	조림사업	10.0	2024	2024	3~4월	4월	동변리 산77, 산78
숲가꾸기	풀베기사업	69.4	2024	2025	7~9월	9월	연 2회
	산불예방 숲가꾸기	2.0	2024	2025	9~11월	11월	동변리 산70-1, 산70-2
기반시설	임도신설	1.0	2024	2024	4~10월	10월	동변리 산56-2외

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.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3) 2025년도(7년차) 통합사업비 산출 내역서

(금액단위 : 천원)

항 목	단위	수 량	단 가	금 액	비 고
1. 사업관리비				**167,665**	
1.1. 인건비(A)				**131,983**	
-직접인건비(경영팀장)	인	1	71,459	71,459	선도산림경영단지 경영전문인력 인건비 기준단가(2023년 기준)
-직접인건비(사업담당)	인	1	43,810	43,810	선도산림경영단지 경영전문인력 인건비 기준단가(2023년 기준)
-간접인건비		직노×요율	14.50%	16,714	토목공사제경비요율
1.2. 사업관리경비(B)				**26,192**	
(1) 여비교통비				3,200	
- 현장조사여비(팀장)	일	120	10	1,200	1개월 x 15일(임차차량) x 8월 (선도교육관외출장포함)
- 현장조사여비(담당)	일	200	10	2,000	1개월 x 20일 x 10월
(2) 차량비				12,492	
-렌트비	월	12	777	9,324	
-유류대	월	12	40L*4회/월	3,168	휘발유기준금액 1650원(변동단가적용)
(3) 소모품비	식	1	500	500	복사용지 등
(4) 교육훈련비	식	1	300	300	
(5) 도서인쇄비				200	
-각종설명회자료	식	1	100	100	
-도서구매 및 제본비	식	1	100	100	
(6) 수선비	식	1	3,500	3,500	
(7) 회의비				4,300	
- 운영협의회 등	회	3	1,000	3,000	
- 선진지견학	회	1	500	500	
- 전문가 자문료	회	1	800	800	
(8) 홍보비	식	1	1,500	1,500	조림 대상지 입간판 설치
(8) 기타				200	
-통신비	식	1	100	100	
-증명서 발급비	식	1	100	100	
1.3. 일반관리비(C)		(A + B)	**6.00%**	**9,490**	토목공사제경비요율
1.4. 부가가치세(D)		(A+B+C)	0%	-	부가세 면세
2. 외주 사업비				**117,978**	
2.1. 세부설계용역비	식	1	13,207	13,207	산림사업표준품셈,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참고
2.2. 전문가위탁비	식	1	4,400	4,400	사업비정산 , 홈페이지개편
2.3. 산림사업비(조림사업)		1	100,371	100,371	낙엽송 10.0ha
3. 직접사업비				**472,639**	
3.1. 기반시설조성사업	식	1	305,300	305,300	임도 1.0km
3.2. 숲가꾸기사업	식	1	41,031	41,031	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2.0ha
3.3. 숲가꾸기사업(풀베기)	식	1	126,308	126,308	1차 29.7ha + 2차 39.7ha
통합사업비 계				**758,282**	

※ 단지조성에 따른 본 사업비는 실시설계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, 단지조성 직접사업비는 개별사업정산하며, 대행사업관리비 중 간접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제외한 직접인건비, 사업관리경비는 2025년도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산.

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.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4. 2025년도(7년차) 통합사업비 산출 근거 및 정산방법

1) 경영주체의 사업추진인력 구성 및 역할(직접인건비)

❍ 선도 산림경영주체의 추진 조직 구성

- 전문경영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과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전담인력(경영전문가) 배치
  * 경영주체의 타 업무와 겸임 불가
- 경영주체 내에 경영전문가 1인과 경영(사업)담당 1인에 의한 선도산림 경영팀을 구성
-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조달청이 발표하는 토목공사 요율 적용
- 기타 인건비 등은 조달청 제경비요율의 일반관리비에 해당

❍ 선도 산림경영단지 전임자 자격요건

구분	주 요 업 무	자 격 요 건
경영 전문가	- 선도경영 업무 총괄 - 산주 조직화 등	° 경영주체 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또는 3년 이상 장기계속 근무가 가능한 경영주체 직원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- 경영주체 직원 * 경영주체가 산림조합인 경우는 지도원으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
경영 담당	- 산주 조직화 및 지도 - 사업계획 수립·시행 - 사업 설명/평가 수행 등 - 선도경영 전담	° 외부전문가 또는 경영주체 직원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- 경영주체 직원 * 경영주체가 산림조합인 경우는 근무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보유자

2) 선도산림경영단지 전문경영주체 인건비 지원 기준

❍ **단지경영주체의 전임자 인건비**

- 단지경영주체의 전임자 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한 업무 가중치에 의한다.
  * 오스트리아의 경영면적별 전문경영인력 배치기준과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작성

- 단지경영주체의 책임경영자 인건비는 대리경영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, 산림조합 지도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**기준금액에 매년의 인건비 인상률(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함)을 반영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**함.

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.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* 기준금액(’ 15년)

· 경영팀장 1인의 인건비 기준 : 연봉 총액으로 60,000,000원
· 경영담당 1인의 인건비 기준 : 연봉 총액으로 50,000,000원

- 경영주체의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며, 경영주체가 산림조합(중앙회)이고, **담당자가 산림경영지도원인 경우는 정부 보조 지도원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**함.

❍ 선도 산림경영단지 전임자 배치 기준(2023년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)

인력구분	년 지급액	비 고
경영 전문가	**년 71,459,500원**	산림청 산림자원과-3062(2023.05.11.) 선도산림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성요령 일부개정 적용
경영(사업) 담당자	**년 59,549,400원**	

* 주 1) 본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기준금액인 2015년 경영전문가 년 60,000,000원과 경영(사업)담당자 년 50,000,000원에 매년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적용.

* 주 2) 산림청에서 2022년 적용단가(경영전문가 70,265,000원, 경영(사업)담당자 58,554,000원)에 2022년도 공무원 급여인상률 1.7%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.

❍ 전문경영주체 경영전문가의 간접인건비 지원 기준

- 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노무비로, 특정제품에 대한 소비액을 직접 파악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.
-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기준에 의해 간접작업임금, 간접공임, 대기임금, 휴업임금, 급료, 종업원상여 등으로 나뉘며,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.
- 간접인건비는 직접인건비의 조달청 토목공사 요율을 적용한다.

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.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❍ **전문경영주체 경영전문가의 간접인건비 지원 기준**

- 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노무비로, 특정제품에 대한 소비액을 직접 파악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.
-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기준에 의해 간접작업임금, 간접공임, 대기임금, 휴업임금, 급료, 종업원상여 등으로 나뉘며,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.
- 간접인건비는 직접인건비의 조달청 토목공사 요율을 적용한다.
- 전년도 '선도 산림경영단지 평가'에서 미흡이하로 평가된 단지는 경영책임자와 사업담당의 인건비를 차등 지원한다. 이 경우 당해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  * (미흡) 산림청에서 매년 시달하는 인건비 기준의 50% 지원
  * (부진) 산림청에서 매년 시달하는 인건비 기준의 30% 지원
  * 차액은 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

3) 사업관리경비

- "사업관리"란 사업에 대한 기획, 타당성조사, 분석, 설계, 조달, 계약, 시공관리, 감리,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휘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-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서 전문경영주체의 사업관리 활동은 산주의견수렴, 단지경영에 대한 총괄 기획, 운영은 물론 설계 · 감리 등 세부 사업을 발주 및 사업 추진 전반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.
- 사업관리비 산출방식에는 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산출방식이 있으나, 본 사업에는 실제 소요 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.
- 사업관리경비에는 여비교통비, 차량비, 소모품비, 교육훈련비, 도서인쇄비, 수선비, 회의비, 산지재해보험료등 사업관리를 위한 일체의 경비를 반영하되,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.
- 효율적 현장관리 및 산주 의견 수렴 등 참여도 증대를 위해 단지 내에 현장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. 현장사무실은 컨테이너 등 간이시설을 임대해 사용한다.

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.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4) 일반관리비

-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 또는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임원 급료, 사무실 직원의 급료, 제수당, 퇴직급여충당금, 복리후생비, 여비, 교통비 · 통신비, 수도광열비, 세금과 공과, 지급임차료, 감가상각비, 운반비, 차량비, 경상시험연구개발비, 보험료 등을 말하며,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. 이때 일반관리비는 개별적 파악이 어려우며,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기간수익에 총괄적으로 대응한다.
-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경영주체의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경비를 말한다.
- 따라서, 본 사업에는 조달청 발표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.

5) 부가가치세

- 대행사업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문경영주체가 선도산림경영 활용을 용역사업의 형태로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.
- 단지조성을 위한 임도 등 세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 종류별로 판단하여 적용한다.

  ※ 부가세 납부 대상 사업 : 산림도로시공업, 휴양림조성업, 산림욕장, 수목원조성 · 관리사업 등

- 이 경우 부과 대상금액은 인건비와 사업관리경비, 재료비, 일반관리비 등 총원가에 대하여 10%를 적용하게 된다.
-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면제되므로 대행사업관리용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다음의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.

- 산출 부가세 : {재료비+산출경비(기계경비+운반경비+가설경비)}×10%

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.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6) 외주사업비

① 보조(위탁)사업자는 보조(위탁)사업의 내용 중 용역의 품질 또는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외주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.

- 선도 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주체의 관점에서 산주의 의사를 반영한 산림경영이 필요하므로 관련 설계와 회계 전문가 위탁, 산림경영계획의 수립,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등 다양한 외주 시행이 필요

② 외주사업 중 설계, 감리 등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

❍ (감리사업)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수행하고,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통합사업비에 편성 "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"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 및 관리

-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는 공개경쟁 원칙 적용
- 기술 능력이 뛰어난 기술자가 참여토록 지역제한시 시·도 단위로 확대

* 선도 산림경영단지 산림경영 품질향상 대책(산림청 산림자원과-1153호, 2019.2.27.)

❍ (설계검수)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,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검수가 불가능한 경우 "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"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설계 검수

- 최종검수는 경영책임관이 실시하되 운영협의회에 설계검수 지원단을 두고 검수의견을 받아 최종 검수
- 설계검수 지원단은 운영협의회 위원 중 경영주체, 지자체, 전문가 중 3인을 지원단으로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 별도 구성
-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은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 완료 10일 이전에 감리자를 선정하고, 전년도 설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이전에 감리 발주하여 감리자의 검토의견을 받아 참고

* 선도 산림경영단지 클린경영 대책 (산림청 산림자원과-5260호, 2020.9.8.)

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.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❍ (회계감사) 경영주체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

- 회계감사 유형 중 원칙적으로 이행감사(사업비정산 감사)를 실시

*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보고서(이행감사)를 제출

* 경영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한 경비는 경영주체가 부담

* 회계감사의 유형

· 업무감사 : 조직의 능률과 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 절차를 검토 · 이행감사 :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 · 재무제표감사 :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검토

❍ (산림사업의 외주사업 비율) 조림, 숲가꾸기, 벌채, 임도시설(보수포함) 등 산림사업비의 20%이상은 외주사업비로 편성

- 외주사업비 중 개소당 또는 계약건당 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진

*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도 국가(지방)계약법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

③ 사업비의 산정 및 원가계산 기준이 각각 상이하므로 본 「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성기준」을 우선 적용하되,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7) 단지조성 직접사업비

- 직접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을 위해 직접 또는 위탁 시행해야 할 임도, 숲가꾸기, 임목수확,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말한다.
- 사업비는 해당사업 설계 · 감리 시행지침 등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한다.

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.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가. 조림사업은 “조림 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”을 따른다.

나. 숲가꾸기사업은 “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”을 따른다.

다. 벌채는 「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」과 「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」 및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3의 벌채기준, 「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」을 따른다.

라. 입목의 굴취와 이식사업은 “건설표준품셈 조경공사”를 따른다.

마. 임도는 “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”과 “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”을 따른다.

바. 사방시설은 “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설기준”과 “세부시설기준”을 따른다.

사. 산림복합경영 등 단기소득사업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- 단기소득임산물 재배(산림복합경영)와 관련하여 재배 기반조성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가능하다.
- 경영주체 전임자는 단지 내 산주가 산림복합경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안내
- 다만, 「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계획(2019.3, 산림청)」에 따라 추진하는 단지별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는 설계·조성 및 3년 이내의 사후 관리비를 선도단지 사업예산으로 집행가능)
- 각 사업비에는 사업별 제경비(이윤포함)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를 작성(설계금액)하여야 한다.
- 직접사업비는 설계금액의 88%이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, 실행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행, 정산하여야 한다.
- 실행예산 편성 시에는 장비 임차료 등의 실 집행 비용 정산을 위해 비목간(재료비, 노무비, 경비) 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으나, 총액은 설계금액의 88%를 초과할 수 없다.